

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1386
----------	------

2023년 12월 15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옥재은 의원 외 49명

나. 제안일 : 2023년 10월 16일

다. 회부일 : 2023년 10월 23일

라. 상정일 :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

2023년 11월 2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옥재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는 등 협해화되고 있어, 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하여 활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.
- 또한 북한주민 인권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,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- 현재 부서 업무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문에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명시하고 조례명, 기금·위원회 명칭 등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.
-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시 기금운용 전문가를 포함하고 적절한 규모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」로 함.
- 목적에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추가함(안 제1조)
-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)
- 기금의 명칭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원 사업과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을 신설함(안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 제4호, 제5호)
- 위원회 명칭을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원을 30명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함. 또한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, 제8조, 제9조)
-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·자립 지원,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, 「남북협력기금법」, 「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나. 입법예고(2023. 10. 26. ~ 10. 30.) 결과: 의견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가.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,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, 목적(안 제1조), 시장의 책무(안 제2조), 기금 명칭 및 용도(안 제3조, 제3조의2 및 제4조), 위원회 관련사항(안 제5조, 제8조 및 제9조)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라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기금의 활용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북한 인권 증진 사업까지 확대하여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※ 행정국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로 직·간접 남북교류가 불가능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음.
- 다만,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규정 내용과의 충돌소지는 없는지,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범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
- 한편, 2023년 9월말 기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27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용액은 3억 6천만원(1.1%)에 불과한 상황으로 기금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관리되고 있음.

<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, 2023.9.30. 기준)

전년도말 조성액(A)	당해연도 증감액			현재액(A)+(B)
	계(B) = (C)-(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31,992	724	1,086	362	32,716

나. 세부 내용 검토

1) 제명

- 제명은 주요 규정 내용를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,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‘평화통일기반조성’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</u> <u>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</u>	<u>서울특별시</u>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</u> <u>기반조성에 관한 조례</u>

- 동 내용은 ‘평화통일기반조성’을 목적(안 제1조), 시장의책무(안 제2조), 기금의 명칭(안 제3조), 위원회 명칭(안 제5조) 등을 개정함에 따라, 조례 제명의 대표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2) 목적(안 제1조)

-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의 목적인 ‘남북교류협력 증진’에 더하여 ‘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’을 추가하여 목적의 의미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- 목적규정은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시민이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,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하는 바, '평화통일기반조성' 관련 개별 개정 조문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3) 시장의 책무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시장의 책무로 현행 '남북교류협력사업' 추진에 더하여 '평화통일기반사업'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의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공동으로 문화·체육·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(이하 "남북교류협력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(이하 "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-----.</p>

- 다만, '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'의 의미는 추상적·포괄적이므로 구체적으로 의미를 밝힐 필요는 없는지, 즉, 안 제4조(기금의 용도)에서 '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'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과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

제고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의 책무에서는 구체적인 표현을 생략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4) 제2장 제목

- 제2장 제목은 ‘남북교류협력기금’의 명칭을 ‘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’으로 하는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제목을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2장 <u>남북교류협력기금</u> 설치 및 운용	제2장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</u> 설치 및 운용

5)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 현행 기금 명칭인 ‘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’을 ‘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’으로 하는 개정취지에 맞추어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)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	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) ① -----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-----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-----.

6) 기금의 존속기한(안 제3조의2)

- 안 제3조의2는 기금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내용에 맞춰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<u>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</u> 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
7) 기금의 용도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원 사업 및 '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'을 추가하여 조례에 기금 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. <u>통일문화조성사업</u>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. 「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」에 따른 지원사업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제4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원 사업 5. <u>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</u>

현 행	개 정 안
<u>4. (생 략)</u>	<u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u>
5. 그 밖에 <u>남북교류협력위원회</u> 에서 심의·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	7. ----- <u>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</u> -----

- ‘평화통일기반조성’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의 구체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사업의 기금사용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 - 다만,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 관련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¹⁾에서는 시장이 「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
 -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지원 규정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큰 기금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중복지원 또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할 소지는 없는지, 일반회계와 기금지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* 행정국은 일반회계는 기초물품·건강·돌봄 등 기존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기금을 통해 대시민 인식 개선, 사회통합, 취·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.

1)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) ①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아울러, ‘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’ 관련 상위법령인 「북한 인권법」 제2조에서는 ‘북한인권증진’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라고 볼 수 있는 바, 규율범위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는 조례에 ‘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’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보임.

「북한인권법」

- 제2조(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)**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(이하 “북한인권증진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
8) 기금의 운용·관리(안 제5조)

- 안 제5조는 현행 ‘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’로 되어있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조례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‘서울특별시평화통일 기반조성위원회’로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) ① (생 략)</p> <p>② 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평화통</u> <u>일기반조성위원회</u> ----- -</p>

9) 제3장 제목

- 제3장 제목은 ‘남북교류협력위원회’의 명칭을 ‘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’로 개정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제목을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	제3장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

10)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설치(안 제8조)

- 안 제8조는 ‘평화통일기반조성’을 조례 목적에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북한인권 증진 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문구를 정리하고 개정내용을 추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설치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· 조정 2.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. 「서울특별시 평화 · 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평화 · 통일 교육 기본계획	제8조(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설치) - -----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-----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-----. 1.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총괄 · 조정 2.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3. 「서울특별시 평화 · 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평화 · 통일 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지원

현 행	개 정 안
4. 기금의 운용 및 관리	4. (현행과 같음)
5. <u>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 교류 및 평화·통일 교육 지원</u>	5. <u>북한이탈주민 정착·자립 지원 등</u>
6. <u>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</u>	6. <u>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</u>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7. (현행과 같음)

11) 위원회 구성 등(안 제9조)

- 안 제9조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위원 위촉대상에 ‘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’를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30명 이내</u>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1. <u>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</u> · 단체에 근무하는 자</p> <p>2. <u>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</u></p> <p>3 ~ 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 ----- <u>20명 이내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</u> -----</p> <p>2.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</u> -----</p> <p>3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</u></p>

- 최근 2년간 위원회 회의 평균 참석 인원수는 약 18명 수준인 바, 위원수를 적정 인원으로 조정하고, 기금 운용 민간전문가를 위촉대상으로 포함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.
- 다만,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 위원의 필수 구성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짐.

〔 최근 2년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〕

연도	일시/장소	구분	안건내용	참석현황
2022 (7회)	2.25/영상	보고·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2년 남북협력추진단 신년 업무계획 보고 · 2022년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(안) 등 2건 심의 	28명 중 18명
	3.28/제2청사 스마트회의실	보고·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남북통일 MZ세대 통일문화 선도사업 중간보고 ·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 등 3건 심의 	28명 중 14명
	5.4/서면	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일교육주간 연계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 지원(안) 심의 	28명 중 19명
	6.24/서면	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) 	27명 중 19명
	9.30/시도지사 협의회 대회실	보고·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, 사회통합 지원 추진현황 등 2건 보고 · 2023년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 논의 	17명 중 18명
	10.13/서면	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(안) 등 2건 	27명 중 19명
	12.16/서면	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 	27명 중 21명
2023 (4회)	2.23/ 간담회장1	보고·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,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보고 ·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(안) 등 4건 	27명 중 17명
	4.7/서면	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3년 평화통일·안보교육 공모사업 평가·선정결과 최종안 심의 ※ 공모사업 사전평가위원회 개최 : '23.3.27.~3.28.(2일) 	27명 중 19명
	5.15/서면	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 	26명 중 15명
	10.19/ 간담회장2	보고·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한이탈주민 완전한 정착 지원계획 등 2건 ·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등 2건 	23명 중 16명

12)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(안 제12조)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(안 제13조)

- 안 제12조~제13조는 안 제2조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‘남북교류협력사업’을 ‘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’으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) 시장은 제2조제1항의 <u>남북교류협력사업</u> 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	제12조(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) -- -----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</u> <u>통일기반조성사업</u> ----- ----- -----.
제13조(민간인 국외여비 지원) 시장은 제2조제1항의 <u>남북교류협력사업</u> 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13조(민간인 국외여비 지원) ---- -----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</u> <u>통일기반조성사업</u> ----- ----- -----.

13) 부 칙(안 부칙)

- 안 부칙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,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행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과조치이고, 안 부칙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는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, 조례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평화·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」에 조례 제명, 위원회 명칭 등 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사료됨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평화·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,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를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”로 하고,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를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로 하고, “남북교류협력기금”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”으로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8명, 전원 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” 를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” 을 “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협력사업” 을 “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 으로,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)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(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)을 매년”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 으로, “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” 을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” 으로 한다.

제3조의2 본문 중 “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” 을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통일문화조성사업” 을 “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 를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 로 한다.

4.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원 사업
5.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 를 “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 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” 을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” 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” 를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설치” 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남북교류협력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” 으로, “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 를 “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촉진” 을 “촉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” 으로

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평화·통일 교육 기본계획” 을 “평화·통일 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지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인도적 지원” 을 “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” 으로 한다.

5. 북한이탈주민 정착·자립 지원 등

제9조제1항 중 “30명 이내” 를 “20명 이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남북교류협력” 을 각각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” 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제12조 중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 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평화·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,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를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”로 하고,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를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로 하고, “남북교류협력 기금”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<u>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</u>	서울특별시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</u> <u>기반조성에 관한 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,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, <u>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</u></p> <p>-----</p>
<p>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의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공동으로 문화·체육·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(이하 "남북교류협력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</u>(이하 "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</u>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-----.</p>
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	제2장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) ①</p> <p>시장은 <u>남북교류협력사업</u>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</p>	<p>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) ①</p> <p>-----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</u> ----- <u>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</u> -----.</p>
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<u>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</u>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p>1.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</p> <p>2. <u>통일문화조성사업</u>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</p> <p>3. 「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」에 따른 지원사업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<u>남북교류협력위원회</u>에서 심의·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원 사업</p> <p>5. <u>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</u></p> <p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7. ----- <u>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</u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) ① (생 략) ② 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<u>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장 <u>남북교류협력위원회</u> 설치 및 운영</p>	<p>제3장 <u>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</u> 설치 및 운영</p>
<p>제8조(<u>남북교류협력 위원회</u> 설치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<u>남북교류협력</u>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남북교류협력사업</u>의 총괄 · 조정 2. 남북교류협력의 <u>촉진</u> 3. 「서울특별시 평화 · 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<u>평화 · 통일 교육 기본계획</u> 4. 기금의 운용 및 관리 5. <u>남북교류협력기반</u>의 조성과 민간 교류 및 평화 · 통일 교육 지원 6. <u>인도적 지원</u>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제8조(<u>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</u> 설치) - -----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</u> ----- <u>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</u>의 총괄 · 조정 2. 남북교류협력의 <u>촉진</u> 및 <u>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</u> 3. 「서울특별시 평화 · 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<u>평화 · 통일 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지원</u>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북한이탈주민 정착·자립 지원 등</u> 6. <u>북한인권 증진 등</u> <u>인도적 지원</u>과 <u>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</u> 7. (현행과 같음)
<p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30명</u>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</p>	<p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 ----- <u>20명</u> 이내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1. <u>남북교류협력</u>과 관련이 있는 기관 · 단체에 근무하는 자</p> <p>2. <u>남북교류협력</u>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</p> <p>3 ~ 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1.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</u> -----</p> <p>2.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</u> -----</p> <p>3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</u></p>
<p>제12조(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) 시장은 제2조제1항의 <u>남북교류협력사업</u>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) ----- -----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민간인 국외여비 지원) 시장은 제2조제1항의 <u>남북교류협력사업</u>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민간인 국외여비 지원) ----- -----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</u> ----- ----- -----.</p>